

## 2014년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공고

산학연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『2014년도 중소기업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』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4년 1월 15일  
중 소 기 업 청 장

### 1. 사업개요

- 사업목적** : 대학·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개발 자원을 활용하여 혁신기술의 기술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제고 및 창업 사업화 촉진
- 지원규모** : 1,401억원
- 지원대상** : 대학·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신제품개발 및 연구개발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
- 지원내용**
  - ① **(첫걸음기술개발)** 정부 R&D에 처음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대학·연구기관과 연계한 기술개발 지원
    - \* <별첨 1> '2014년도 첫걸음, 도약 기술개발 시행계획' 참조
  - ② **(도약기술개발)** 기술혁신 역량부족, 성장정체 기업 등을 대상으로 대학·연구기관과 연계한 기술개발 지원
    - \* <별첨 1> '2014년도 첫걸음, 도약 기술개발 시행계획' 참조
  - **산연전용** : 연구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활용하여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 및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
    - \* <별첨 3> '2014년도 산연전용 기술개발 시행계획' 참조

- 연구마을 : 중소기업의 연구기능을 대학 내에 집적화하여 상시 기술 협력체계 구축 및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능력 고도화 지원

\* <별첨 4> '2014년도 연구마을 지원사업 시행계획' 참조

-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 : R&D의 원천인 기업부설연구소를 대학·연구기관 내에 설치·운영토록 지원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능력 제고

\* <별첨 5> '2014년도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사업 시행계획' 참조

③ (글로벌시장형 창업사업화 기술개발) 세계시장을 선도할 기술아이템을 보유한 유망 창업팀을 선발, 엔젤투자-보육-R&D를 일괄 지원

\* 별도 공고문 '글로벌시장형 창업사업화 R&D 창업팀 지원계획 (중소기업청 공고 제2014-3호)' 참조

< 2014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>

구 분	지원대상	지원조건	예산 (억원)
첫걸음 기술개발	정부 R&D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중소기업	1년, 1억원 정부 75% 이내 (지자체 지원금 포함)	400
도약 기술개발	기술혁신 역량제고를 통해 성장·도약이 필요한 중소기업	1년, 1억원 정부 75% 이내	478
산연전용	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 등을 보유한 연구기관과 R&D를 수행하고자 하는 중소기업	1년, 1.5억원 정부 75% 이내	120
연구마을	대학 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/이전하는 중소기업	1년, 1억원 1차년도 : 정부 75% 이내 2차년도 : 정부 60% 이내	120
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	기업부설연구소를 처음 설치하는 중소기업	2년, 2억원 신규과제 : 정부 75% 이내 계속과제 : 정부 60% 이내 (지자체 지원금 포함)	73
글로벌시장형 창업사업화 기술개발	우수 기술아이템을 보유한 유망(예비) 창업팀	3년, 5억원 정부 90% 이내 (정부지원금의 20% 이상 투자금 별도지원)	210

※ 지원조건외 지원한도·출연금 비중은 “최대”를 의미함

※ 자율편성형 R&D는 첫걸음기술개발과 도약기술개발에 포함 : <별첨 2> 참조

## 2. 신청자격

- 신청기업 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
  - \* 사행산업 등 일부 업종은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
- 대학 :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
  - \* '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'은 자율편성형·연구마을 지원사업 신청 불가
- 연구기관 : 국·공립연구기관, 정부출연연구기관, 전문생산기술연구소, 특정 연구기관 등 비영리 연구개발법인
  - \*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개별 사업내용을 참조

## 3. 신청기간 및 방법

구분	신청대상	신청시기	신청방법
첫걸음 기술개발	신청기업	2, 4, 6, 8월 (1~10일)	온라인 신청
도약 기술개발	신청기업	2, 4, 6, 8월 (1~10일)	* 단, 건강진단 신청기업은 오프라인 신청
산연전용	신청기업	별도안내	신청 연구기관 자체 안내
	연구기관	2.10~21	우편 또는 방문 신청
연구마을	신청기업	별도안내	신청 대학 자체 안내
	대학	4.1~14	우편 또는 방문 신청
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	신청기업	4.1~14	온라인 신청
글로벌시장형 창업사업화 기술개발	창업팀	매월	한국엔젤투자협회 문의

### □ 온라인 신청

-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(<http://www.smtech.go.kr>)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신청

☞ 사업계획서 신청 : <http://www.smtech.go.kr> → 회원가입 → 로그인 → 온라인 과제관리 → 과제신청 → 사업계획서 내용입력

- \*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방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개별 사업내용을 참조

#### 4. 지원제외 사항

□ 사업에 참여하는 자(대학·연구기관, 중소기업, 대표자 등)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- ① 기업의 부도, 휴·폐업
- ② 국세·지방세 체납자로 확인된 경우  
- 다만,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,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제외
- ③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
- 다만,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,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예외
- ④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,000%이상인 경우(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)  
-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,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
- ⑤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(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)
- ⑥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(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와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)

-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(각종 보고서 제출, 기술료 납부,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)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
-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
- 신청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,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 사업별 기본목적, 개발특성,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
-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,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,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
-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·채용 불공정 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
- 창업 2년 이상인 기업이 대면평가 전까지 재무제표(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경우만 인정)에 해당하는 내용을 증빙하지 않은 경우

- ※ 국세·지방세, 채무불이행 및 의무사항불이행의 경우, 과제 선정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는 예외
- ※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,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

## 5. 기타 공지사항

- 중소기업은 '산학협력 기술개발사업'의 세부과제 중 1개 과제만 수행 가능
- 중소기업은 해당년도에 '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' 중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최대 2개 과제까지 수행가능
  - ※ 기 수행중인 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예외
- '05년 이후 개별 기업 당 '저변확대' 사업을 총 3회 이상 수행했거나 '선택집중' 사업을 수행한 경우 신청 불가(저변확대 졸업)
  - ※ '산학협력기술개발사업' 참여기업은 '13년부터 참여횟수로 계산되므로 '13년 이전 '산학협력기술개발사업' 참여실적은 '저변확대' 수행실적에서 제외
  - ※ 연도별 '저변확대' 및 '선택집중' 사업 : <별첨6> 또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참조(<http://www.smttech.go.kr>)
- 사업에 참여하는 자(대학·연구기관, 중소기업, 대표자, 과제책임자 등)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
-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2014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각 세부사업의 관리지침을 적용함

- ※ 세부 사업별 신청자격, 출연금 지원기준, 기술료, 지원제외사항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, 세부과제별 시행계획(별첨1~5) 및 관리지침 참조
- ※ 각 사업별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일정 변경 및 추가 사업안내는 문의처의 전문기관 및 사업관리 홈페이지에 공지

## 6. 문의처

### ○ 관리기관(지방중소기업청)

기관명	전 화		주 소
	첫걸음, 도약	기업부설 연구소	
서울	02-2110-6361	02-2110-6361	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
부산·울산 (울산사무소)	051-601-5147 (052-283-0335)	051-601-5145 (052-283-0335)	부산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(울산 북구 산업로 915)
대구·경북	053-659-2505	053-659-2502	대구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32
광주·전남	062-360-9159	062-360-9158	광주 서구 경열로 17번길 12
경기	031-201-6972	031-820-9023	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
인천	032-450-1155	032-450-1164	인천 남동구 은봉로 82
대전·충남 (천안사무소)	042-865-6146 (041-564-2284)	042-865-6146 (041-564-2284)	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104 (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)
강원	033-260-1632	033-260-1633	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
충북	043-230-5348	043-230-5332	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
전북	063-210-6453	063-210-6452	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
경남	055-268-2572	055-268-2564	경남 창원시 외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
제주	064-710-2637	064-710-2637	제주시 문연로 6

### ○ 전문기관

전문기관		전 화	문의사항
한국산화연합회	R&D 콜센터	1661-1357 (내선 3번)	신청·접수 및 향후일정 등

※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

·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: <http://www.smtech.go.kr>

·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: <http://www.smba.go.kr>

<별첨 1> 2014년도 첫걸음, 도약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

<별첨 2> 2014년도 첫걸음, 도약 (자율편성형) 시행계획

<별첨 3> 2014년도 산연전용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

<별첨 4> 2014년도 연구마을 지원사업 시행계획

<별첨 5> 2014년도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사업 시행계획

<별첨 6> 연도별 “저변확대” 및 “선택집중” 사업 현황

## 2014년도 첫걸음, 도약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

### 1. 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대학·연구기관의 우수한 연구 인프라(인력, 장비 등)를 활용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지원으로 기술경쟁력 제고
- 지원규모 : 628억원 내외(첫걸음 300억원, 도약 328억원)
- 지원대상 : 대학·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신제품개발 및 연구개발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
- 지원내용
  - (첫걸음R&D) 정부 R&D에 처음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학·연구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 지원
    - 지역 내 중소기업-대학·연구기관 연계의 경우 지자체 예산 매칭 지원
  - (도약R&D) 기술혁신 역량제고를 통해 성장·도약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학·연구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 지원

### 2. 신청자격

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
  - \* 사행산업 등 일부 업종은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

### 3. 지원금액 및 한도

- 정부출연금 및 지원기간 : 총사업비의 75%이내, 최대 1년
- 민간부담금 :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5%이상을 부담  
(총사업비의 3%이상은 현금)

구 분		개발기간 및 금액	정부출연금 비중	방 식
첫걸음 기술개발	동일지역	최대 1년, 1억원 이내	정부 50%, 지자체 25% 이내	지자체 매칭
	타지역		정부 75% 이내	지자체 비매칭
도약기술개발				

#### 4. 신청기간 및 방법

□ 신청기간 : 총 4회, 격월(2, 4, 6, 8월) 1~10일까지 접수

□ 신청방법

○ 인터넷 접수 :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([www.smttech.go.kr](http://www.smttech.go.kr))에 접속하여 제출

- 신청 시 구비서류

- ① 신청자격 자가진 단서
- ②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
- ③ 신용등급 조회 동의서 (기업 및 대표자) 등

※ 신청절차 : <http://www.smttech.go.kr> → 회원가입 → 로그인 → 과제 관리 → 과제신청 → 지원사업 선택 후,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 등록

\* 마감일에는 접수 폭주로 인하여 전산입력 및 전화 응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니, 가급적 마감일 1~2일 전에 신청완료 요망

- 단, 건강진단 희망기업은 관할 소재지 지방중소기업청 등 진단기관\* 방문을 통한 신청·접수

※ 진단기관(지방중기청, 중진공 지역본부, 신보 영업점, 기보 기술평가센터)에 건강진단신청서 및 기술개발사업 신청서 제출



## 5. 평가 및 선정절차

### 가. 1단계 : 과제신청



#### □ 현장점검

- 관리기관은 현장점검표를 활용하여 현장에서 확인 가능한 사항 중심으로 기업현황을 확인

#### □ 기술평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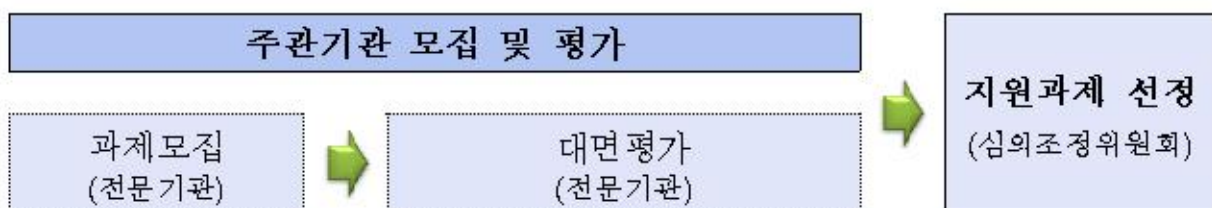
- 관리기관은 기업현장 점검을 통해 기업현황을 파악하고 기술전문가와 동행하여 사업추진 의지, 개발타당성, 사업성 등에 대한 기술평가 실시

#### □ 대면평가 추천

- 관리기관은 기술평가점수 60점 이상 과제 중 모집 차수별 예상 선정 과제의 1.5배수 내 외를 전문기관에 추천

※ 건강진단 신청기업은 전문가를 통한 진단을 실시하고 건강관리위원회에서 적합사업을 결정하여 기술평가 60점 이상 기업에 한해 대면평가 추천  
- 건강진단 : 기업 경영전반에 관한 현재 상황·위치, 경쟁력, 위기관리 역량을 종합적으로 분석·진단

### 나. 2단계 : 지원과제 선정



## □ 과제모집

### ○ 주관기관 공모(모집)

- 전문기관은 추천된 참여기업의 과제 내역(사업유형, 사전매칭 현황 등)을 종합관리시스템(www.smtech.go.kr)을 통해 공개하여 주관기관 공모
- 주관기관(과제책임자)은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과제에 대한 연구개발 내용을 입력하고 사업계획서 등록

#### ※ 유의사항

- ① 사업계획서는 신청기업과 주관기관(과제책임자) 동시 작성
- ② 다수 주관기관이 매칭된 경우, 참여기업에 주관기관 선택권을 부여
- ③ 주관기관 모집 시기에 비매칭된 과제는 다음 회 주관기관 모집 시기에 1회에 한해 재공고(총 2회)

## □ 대면평가

- 분야별 산·학·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실시
- 기술개발 필요성, 기술성, 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

## □ 평가결과 송부

- 전문기관은 대면평가 결과를 관리기관에 송부
  - 중복검토 결과, 참여제한 검토결과, 의무불이행 검토결과, 과제별 평가점수, 평가의견, 적정 사업비 등을 포함하여 송부

## □ 지원과제 선정

- 관리기관은 심의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대면평가 결과와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 확정

## 6. 기타 공지사항

- 기술평가 또는 대면평가에서 탈락한 경우, 기존 사업계획서를 보완하고 보완사항을 명시하여 1회에 한해 재신청 가능

\* 단, 재신청시기가 8월 신청분 평가 시기를 초과할 경우 신청 불가

## 2014년도 자율편성형 첫걸음, 도약기술개발 시행계획

### 1. 사업개요

- 사업목적** : 대학·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개발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제고
- 지원규모** : 250억원 내외(첫걸음 100억원, 도약 150억원)
- 지원대상**
  - **(주관기관)** 중소기업의 연구역량 강화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고자 하는 지원 역량이 우수한 대학
  - **(참여기업)** 대학의 우수한 연구 인프라를 활용하여 공동기술개발을 통한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
- 지원내용**
  - **(첫걸음R&D)** 정부 R&D에 처음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학과의 공동기술개발 지원
  - **(도약R&D)** 기술혁신 역량제고를 통해 성장·도약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학과의 공동기술개발 지원

### 2. 신청자격

- (자율편성형 주관기관)**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·산업대학·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및 「기능대학법」에 따른 기능대학
  - 신청접수마감일 현재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를 설립 및 운영 중이며 코디네이터를 보유하여 과제를 관리 중인 대학
    - \* 연구마을은 신청대상에서 제외
- (컨소시엄 참여기관)** 자율편성형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

- **(참여기업)**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자율편성형 주관기관의 자체평가를 거쳐 추천된 중소기업
  - \* 사행산업 등 일부 업종은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

### 3. 지원금액 및 한도

- **정부출연금 및 지원기간** : 총사업비의 75%이내, 최대 1년
- **민간부담금** :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5%이상을 부담  
(총사업비의 3%이상은 현금)

구 분	개발기간 및 금액	정부출연금 비중	방 식
첫걸음기술개발 (동일지역)	최대 1년, 1억원 이내	정부 50%, 지자체 25% 이내	지자체 매칭
도약기술개발		정부 75% 이내	지자체 비매칭

### 4. 신청기간 및 방법

- **자율편성형 주관기관**
  - 신청기간 : 2014년 2월 10일(월)~2월 21일(금)
  - 신청방법 : 자율편성형 주관기관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대학이 관할 소재지의 각 지방중소기업청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·접수
    - \*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소인 인정
    - 컨소시엄으로 신청할 경우 동일지역 3개 이내의 기관으로 구성이 가능하며, 대표기관을 반드시 대학으로 지정하여 신청
      - \* 컨소시엄 참여기관은 대학 또는 연구기관으로 구성
    - 신청 시 구비서류
      - ① 자율편성형 주관기관 사업신청서
      - ② 자율편성형 주관기관 기관현황표 및 운영계획서
      - ③ 컨소시엄 협약서 등 (컨소시엄 구성 시)

## □ 신청기업

- 신청기간 : 총 2회(4월, 6월), 주관기관 선정 통보 후 별도 안내
  - \* 대상기업 : 자물편성형 주관기관과의 자체평가에 따라 추천된 중소기업
- 신청방법 :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(www.smttech.go.kr)에 접속하여 사업계획서 등 제출
  - 신청 시 구비서류
    - ① 신청자격 자가진단서
    - ②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
    - ③ 신용등급 조회 동의서 (기업 및 대표자) 등

## 5. 평가 및 선정절차

### 가. 1단계 : 주관기관 선정



## □ 현장평가

- 관리기관은 현장점검을 통해 신청기관이 제출한 기관현황표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하고, 사업 추진역량 등을 파악

## □ 대면평가

- 관리기관은 7인 내외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운영계획서에 기재된 참여기업 지원방안, 운영계획 타당성, 기대효과 등을 평가

## □ 주관기관 추천

- 관리기관은 현장평가 결과(50%) 및 대면평가 결과(50%)를 합산하여 지역별 주관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추천
  - 산학협력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추천 주관기관의 수 차등적용

## □ 주관기관 선정

- 전문기관은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주관기관을 최종 선정하고 기관별 지원 가능과제의 수를 배정(기관별 첫걸음, 도약 T/O 분리)

## 나. 2단계 : 지원과제 선정



## □ R&D 과제 수요조사

- 자율편성형 주관기관은 배정된 T/O의 1.5배수 이상 과제를 추천하기 위해 자체 수요조사 등을 통해 과제를 발굴
  - 자가진단 : 주관기관은 과제별 신청기업 및 과제책임자에게 신청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자가진단표를 통한 과제 신청자격 확인
    - \* 신청기업 : 세금 체납, 파산, 부도, 금융기관 채무불이행, 기술료·환수금 미납 등
    - \* 과제책임자 : 과제 책임자의 자격 및 역량 등

## □ 자체평가 및 추천

- 주관기관은 모집된 R&D과제의 적합성, 기술성, 사업성 등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고득점 순으로 T/O의 1.5배수 내외를 전문기관에 추천
  - 과제 추천은 배정 T/O의 50%씩 2회로 분할(4월, 6월)하여 실시
  - 추천대상 과제정보를 종합관리시스템([www.smttech.go.kr](http://www.smttech.go.kr))시스템 입력

## □ 대면평가

- 전문기관은 주관기관이 추천한 R&D 과제를 대상으로 기술분야별 5인 내외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대면평가 실시

□ 지원과제 선정

- 전문기관은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대면평가 결과 및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 심의·확정
  - \* 공예품 등 지역별 특화업종의 소공인 R&D 과제는 대면평가 점수 60점 이상일 경우 자동 선정
- 회차별, 기관별 T/O의 50%를 자체평가결과와 과제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과제 선정

구분	1회차		2회차	
과제 수	T/O의 50%		T/O의 50%	
	25%	25%	25%	25%
평가	자체평가 50% 과제평가 50%	과제평가 100%	자체평가 50% 과제평가 50%	과제평가 100%

## 2014년도 산연전용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

### 1. 사업개요

#### □ 사업목적

- 연구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활용한 산연협력 기술개발 지원으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및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
  -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 인프라(인력, 연구장비, 지원프로그램)와 중소기업 R&D를 연계한 토달 솔루션지원을 통한 시너지 창출

#### □ 지원규모 : 120억원 내외

- 연구기관당 20억 내외의 사업운영(중소기업 기술개발 비용 등) 지원

#### □ 지원대상

- **(주관기관)**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한 연구기관(전문연, 출연연, 시험연 등)
- **(참여기업)** 연구기관과 공동기술개발, 기술이전, 시험인증, 연구인력 교류 등을 통한 기술개발을 하고자하는 중소기업

#### □ 지원내용

- 인적·물적 인프라가 우수한 연구기관을 지정하여, 기술혁신 역량 강화가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동기술개발 지원

R&D(정부지원)	非 R&D (자체 프로그램 등)		
	사업화	인력	기타
기술개발			
공동 R&D	기술이전, 판로개척	연구인력 교류, 기술인력 양성	기술정보 제공, 국제협력 지원, 교육, 세미나 등



## 2. 신청자격

- (주관기관) 신청·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지원 전담조직(중소기업 산연협력센터 등)를 설립·운영 중인 정부출연연구기관, 전문생산기술 연구소, 시험연구원 등

### < 주관기관 범위 >

- 정부출연연구기관 :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부출연기관
- 전문생산기술연구소 : 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」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
- 시험연구원 : 「국가표준기본법」 제30조에 따른 시험인증기관

- (컨소시엄 참여기관)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민간연구기관 등 비영리 연구기관

\* 주관기관은 2개 이내의 연구기관과 컨소시엄 구성가능

- (신청기업)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주관기관의 자체평가를 거쳐 추천된 중소기업

\* 사행산업 등 일부 업종은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

## 3. 지원금액 및 한도

- 정부출연금 및 지원기간 : 총사업비의 75%이내, 최대 1년

- 민간부담금 :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5%이상을 부담  
(총사업비의 3%이상은 현금)

구 분	지원기간 및 정부지원 금액	지원 비중	비고
주관기관	최대 1년, 20억 원 이내		주관기관 T/O 차등배분
R&D과제	최대 1년, 1.5억 원 이내	75% 이내	

#### 4. 신청기간 및 방법

##### □ 주관기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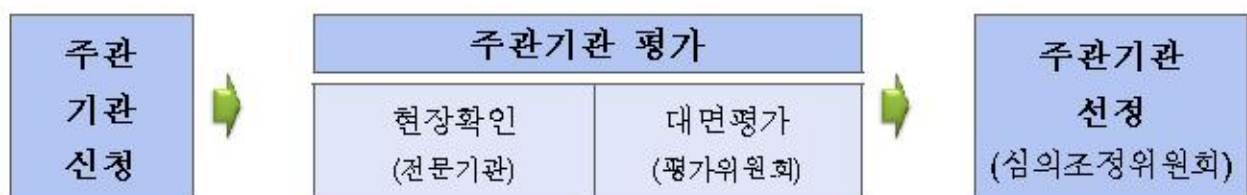
- 신청기간 : 2014년 2월 10일(월)~2월 21일(금)
- 신청방법 : 전문기관((사)한국산학연합회)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·접수
  - \*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소인 인정
- 신청 시 구비서류
  - ① 주관기관 사업신청서
  - ② 주관기관 기관현황표 및 운영계획서
  - ③ 컨소시엄 협약서(컨소시엄 구성 시) 등

##### □ 신청기업

- 신청기간 : 주관기관 선정 통보 후 별도 안내
  - \* 대상기업 : 주관기관과의 자체평가에 따라 추천된 중소기업
- 신청방법 :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([www.smttech.go.kr](http://www.smttech.go.kr))에 접속하여 사업계획서 등 제출
- 신청 시 구비서류
  - ① 신청자격 자가진단서
  - ②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
  - ③ 신용등급 조회 동의서 (기업 및 대표자) 등

#### 5. 평가 및 선정절차

##### 가. 1단계 : 주관기관 선정



## □ 현장평가

- 전문기관은 현장점검을 통해 신청기관이 제출한 기관현황표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하고, 사업 추진역량 등을 파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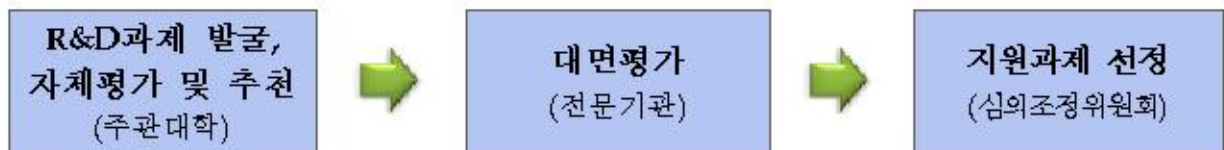
## □ 대면평가

- 전문기관은 7인 내외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운영계획서에 기재된 참여기업 지원방안, 운영계획 타당성, 기대효과 등을 평가

## □ 주관기관 선정

- 전문기관은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주관기관을 최종 선정하고 기관별 지원 가능과제의 수를 배정

## 나. 2단계 : 지원과제 선정



## □ R&D 과제 수요조사

- 주관기관은 배정된 T/O의 1.5배수 이상 과제를 추천하기 위해 자체 수요조사 등을 통해 과제를 발굴
  - 자가진단 : 주관기관은 과제별 신청기업 및 과제책임자에게 신청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자가진단표를 통한 과제 신청자격 확인
    - \* 신청기업 : 세금 체납, 파산, 부도, 금융기관 채무불이행, 기술료·환수금 미납 등
    - \* 과제책임자 : 과제 책임자의 자격 및 역량 등

## □ 자체평가 및 추천

- 주관기관은 모집된 R&D과제의 적합성, 기술성, 사업성 등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고득점 순으로 T/O의 1.5배수 내외를 전문기관에 추천
  - 추천대상 과제정보를 종합관리시스템([www.smttech.go.kr](http://www.smttech.go.kr))시스템 입력

□ 대면평가

- 전문기관은 주관기관이 추천한 R&D 과제를 대상으로 기술분야별 5인 내외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대면평가 실시

□ 지원과제 선정

- 전문기관은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대면평가 결과 및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 심의·확정

## 2014년도 연구마을 지원사업 시행계획

### 1. 사업개요

- 사업목적** : 우수한 연구기반을 갖춘 대학 내에 중소기업 연구기능을 집적화하여 산학협력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
- 지원규모** : 120억원 내외 (신규 2개 내외)
  - 연구마을 당 20억원 내외의 사업 운영(입주기업 기술개발비 등) 지원
- 지원대상**
  - **(참여기관)** 연구마을 운영에 필요한 공간확보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, 인근 중소기업의 연구역량 강화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
  - **(입주기업)** 연구마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 대학과 공동기술개발을 통해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
- 지원내용**
  -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대학(연구마을) 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/이전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
    - 중소기업이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인적·물적 자원을 활용 가능
    - 연구장비를 포함한 R&D 소요자금 및 연구인력의 인건비 지원 가능
  - 입주기업 지원기간 : 최대 2년 (1+1 단년 협약)

1년차		2년차 (선택)	
R&D	· 과제개발 지원	R&D	· 1년차 연계 추가과제 개발
		사업화	· 금형개발 지원 · 생산 공정 기술개발 · 브랜드개발, 마케팅, 홍보 등

## 2. 신청자격

- (참여기관)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·산업대학·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및 「기능대학법」에 따른 기능대학

(공동사항) 대학 내 2개 이내 건물에 입주공간을 20면 이상 확보 (기업별 전용 면적 26㎡ 이상) 후 연구·편의시설 등을 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

- 중소기업 부설연구소가 입주 가능한 유휴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과제관리를 위한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를 보유

\* 자율편성형 주관기관은 신청대상에서 제외

- (입주기업) 연구마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/이전하여 대학과 공동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의한 중소기업

- 연구마을 신청기관이 실시하는 특화기술 수요조사에 응한 기업

\* 현재 대학 자체 사업을 통해 대학 내에 입주해 있는 기업이 아닐 것

## 3. 지원금액 및 한도

- 정부출연금 및 지원기간 : 총사업비의 75%이내, 최대 2년

구 분	정부지원 비중		지원대상	비 고
	구분	국비		
연구마을	2년 + ∞		대학	-
입주기업	1년차	75%	기업부설연구소를 대학 내에 설치/ 이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	-
	2년차	60%		

\* 연구마을은 매년 운영결과를 평가받아야 하며 2년의 운영기간 종료 후 최종평가를 통해 연구마을 갱신여부 평가

\* 입주기업은 1년차 과제 종료 후, 성과보고서 제출 시 2년차 사업계획서 (R&D 또는 사업화)를 제출하여야 하며, 성과평가를 통해 계속/중단 결정

□ 입주기업 부담

- 지원과제 총사업비의 25%이상을 부담(2년차 40%이상 부담)
  - \* 현금 부담비율 : 1년차 3%이상, 2년차 4% 이상
- 연구마을 입주에 따른 임대료는 대학별 기준에 따라 기업이 부담

**4. 신청기간 및 방법**

□ 연구마을 신청대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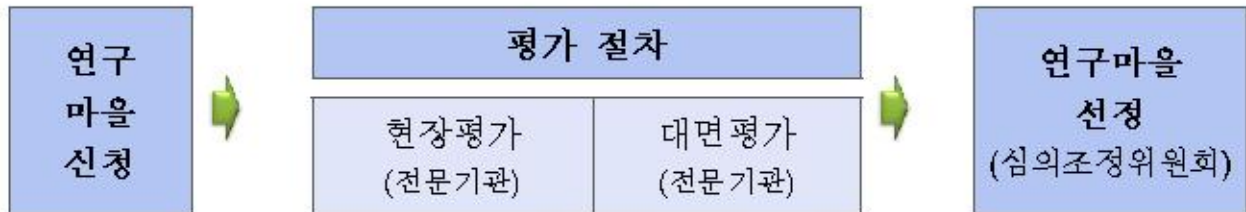
- 신청기간 : 2014년 4월 1일(화)~4월 14일(월)
- 신청방법 : 전문기관((사)한국산학연합회)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·접수
  - \*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소인 인정
- 신청 시 구비서류
  - ① 연구마을 운영계획서
  - ② 입주기업 수요조사서(입주예정 기업수의 2배수 이상 발굴)
  - ③ 연구시설 구축현황 및 입주기업 지원계획

□ 신청기업

- 신청기간 및 방법 : 연구마을 선정 통보 시 별도 안내
  - 연구마을 선정대학 사전 수요조사에 포함된 기업에 한함
  - 신청 시 구비서류
    - ①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
    - ② 신용등급 조회 동의서 (기업 및 대표자) 등

## 5. 평가 및 선정절차

### 가. 1단계 : 연구마을 선정



\* 전문기관 : (사)한국산학연합회

#### □ 현장평가

- 연구마을 인프라 구축현황, 기업지원 여건 등 평가를 통해 대면평가 대상을 3배수 내외 추천

\* 현장평가를 통해 확인된 사항은 대면평가 시 활용

#### □ 대면평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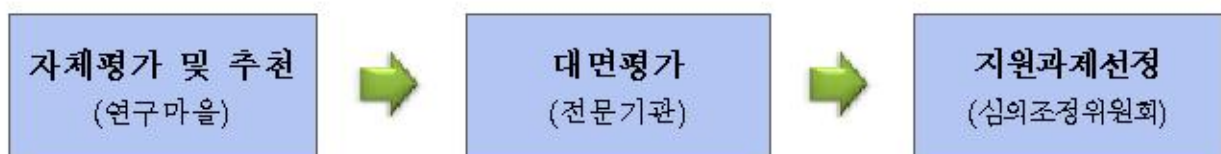
- 전문기관은 현장평가를 통해 추천된 대학의 연구마을 운영계획 타당성, 입주기업 우대방안 등을 평가

- 대면평가 결과를 신청 대학에 개별 통보

#### □ 연구마을 선정

- 전문기관은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연구마을을 최종 선정

### 나. 2단계 : 지원과제 선정



\* 전문기관 : (사)한국산학연합회



□ 자체 평가

- 입주기업 수요조사서 상의 입주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참여 적합성 등을 자체 평가하여 선정예산 과제수의 1.5배수 이내를 전문기관에 추천

□ 대면평가

- 전문기관은 참여기관이 추천한 입주기업 과제의 기술개발 필요성, 기술성, 사업성 등을 평가하여 1배수를 선정

□ 지원과제 선정

- 전문기관은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대면평가 결과 및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 심의·확정

## 2014년도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사업 운영계획

### 1. 사업개요

- 사업목적** : 중소기업이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 신기술·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에 필요한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
- 지원규모** : 73억원 내외
- 지원대상** : 대학·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중소기업
- 지원내용**
  - 중소기업이 대학·연구기관 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 공동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
  - 중소기업은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인적·물적 자원을 활용 가능

### 2. 신청자격

- (신청기업)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범규에 의한 중소기업
  -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를 처음 설치하는 중소기업
- (주관기관) 산학협력 기술개발사업의 주관기관으로서 기업부설연구소 공간 및 연구기자재 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

### 3. 지원금액 및 한도

- 정부출연금 : 총 사업비의 75% 이내
- 민간부담금 :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5%이상을 부담(2년차 40%이상 부담)
  - \* 현금 부담비율 : 1년차 3%이상, 2년차 4% 이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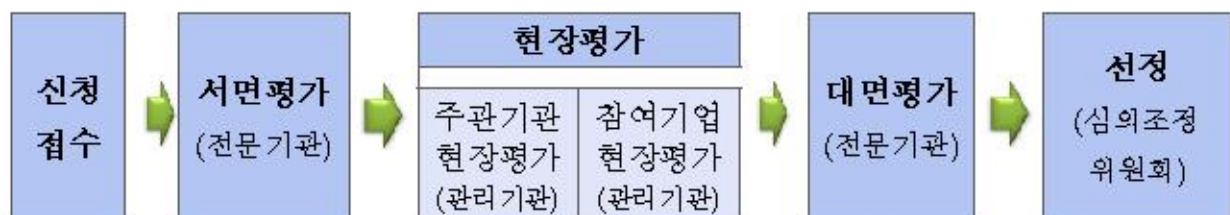
지원규모	정부지원 비중			주 관 기 관	지 원 대 상	비 고
	구분	국비	도비			
2년 2억원	1년차	50%	25%	대학 및 연구기관	기업부설연구소를 대학 및 연구기관 내에 설치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	지자체 매칭
	2년차	40%	20%			

※ 주관기관은 참여기업과 동일 지역 내에 소재할 것

### 4.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

- 신청기간 : '14. 4. 1(화) ~ 4. 14(월)
- 신청방법
  - 인터넷 접수 :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(www.smtech.go.kr)에 접속하여 제출
  - 신청 시 구비서류
    - ① 신청자격 자가진 단서
    - ②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
    - ③ 신용등급 조회 동의서 (기업 및 대표자) 등

### 5. 선정절차



## □ 서면평가

- 전문기관은 제출된 신청서류를 근거로 신청기업 및 과제책임자의 자격요건을 서면 평가
  - \* 중소기업범위 여부 확인, 참여제한 여부, 졸업제 해당여부 확인,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이력, 과제책임자 참여제한 여부 및 자격요건 확인

## □ 현장평가

- 주관기관 현장평가 : 관리기관은 사업 신청 과제의 주관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평가 실시
  - \*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 중심으로 평가하되, 기업부설연구소 설치공간, 연구인력 현황 등 다각도 평가를 통해 주관기관 적합 여부 결정
  - 현장평가를 통과한 주관기관의 신청기업에 대해 현장평가 가능
- 참여기업 현장평가 : 관리기관은 현장방문을 통해 전문기관에 선정 예상 과제의 1.5배수 내외를 대면평가 대상으로 추천
  - \* 참여기업의 기술개발 추진의지, 산학연협력 사업에 대한 이해도,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의 필요성, 기술개발 경험 등을 평가
  - \* 단, 60점 미만 과제는 추천대상에서 제외

## □ 대면평가

- 전문기관은 관기기관이 추천한 과제의 산학연 역할분담,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시 파급효과, 개발과제의 시장성, 인력활용의 적정성 등을 평가

## □ 지원과제 선정

- 전문기관은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대면평가 결과 및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 심의·확정

## 연도별 “저변확대” 및 “선택집중” 사업 현황

연도	“저변확대” 사업명	“선택집중” 사업명
2005	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(일반과제) 중소기업 이 전기술개발사업(일반과제) 생산현장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(중소기업개발과제)	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(전략과제)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(선도과제)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(신규설치) 생산현장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(컨소시엄개발과제)
2006	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(일반과제) 중소기업 이 전기술개발사업(일반과제) 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(중소기업개발과제)	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(전략과제)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(선도과제)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(신규설치) 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(컨소시엄개발과제)
2007	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(일반과제) 중소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(일반과제) 중소기업 이 전기술개발사업(일반과제)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(중소기업기술개발과제)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(보급확산과제) 선도형기술혁신전략과제 지원(슈퍼컴퓨터활용과제)	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(전략과제)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(선도과제)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(투자연계과제)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(신규설치)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(컨소시엄기술개발과제)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(일반과제)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(선도과제) 선도형기술혁신전략과제 지원(첨단장비활용과제)
2008	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(일반과제) 중소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(일반과제) 중소기업 이 전기술개발사업(일반과제)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(일반과제)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(보급확산과제) 선도형기술혁신전략과제 지원(슈퍼컴퓨터활용과제)	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(전략과제)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(투자연계과제)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(선도과제)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(투자연계과제)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(신규설치)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(업그레이드) 중소기업 이 전기술개발사업(선도과제)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(선도과제)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(일반과제)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(선도과제) 선도형기술혁신전략과제 지원(첨단장비활용과제)

2009	<p>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(실용과제) 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(일반과제)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(실용과제) 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(실용과제)  생산환경혁신기술개발사업(실용과제) 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(보급확산과제) 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(실용과제)  첨단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(슈퍼컴퓨터활용과제) 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(실용과제)</p>	<p>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(선도과제)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(신기술사업화평가연계)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(투자연계과제)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(선도과제)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(협력펀드과제)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(투자연계과제) 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(신규설치) 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(업그레이드) 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(선도과제) 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(선도과제) 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(선도과제) 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(연계형과제)  첨단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(첨단장비활용과제) 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(선도과제)</p>
2010	<p>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(창업·실용과제), 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(서비스유망과제) 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(산업보안과제)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(기업제안과제) 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(실용과제) 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(실용과제)  첨단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(슈퍼컴퓨터활용과제) 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(실용과제)</p>	<p>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(미래선도과제)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(글로벌투자과제)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(신기술사업화연계)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(수요조사과제)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(협력펀드과제) 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(신규설치) 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(업그레이드) 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(지정공모과제) 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(선도과제) 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(선도과제) 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(연계형과제)  첨단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(첨단장비활용과제)</p>
2011	<p>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(서비스혁신과제) 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(산업보안과제)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(기업제안과제)  해외수요처연계기술개발사업(해외수요처  (기업제안과제) 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(기업제안과제)  융복합기술개발사업(기업제안과제) 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(기업제안과제)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(창업과제)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(성장과제)</p>	<p>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 (글로벌장소기업육성과제)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(투자연계과제)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(미래선도과제)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 (R&amp;D기획지원연계과제)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(농공상융합과제)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(수요조사과제)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(해외수요처  (글로벌협력과제) 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(신규설치) 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(업그레이드) 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(산연협력과제)  융복합기술개발사업(산연협력과제)  융복합기술개발사업(연계형과제) 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(연구기관제안과제) 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(수요조사과제)</p>

2012	<p>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(서비스연구개발과제)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(기업제안과제)  해외수요처연계기술개발사업(해외수요처  (기업제안과제) 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(기업제안과제) 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(해외기술이전과제) 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(기업제안과제) 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(보급확산과제)  융복합기술개발사업(기업제안과제)  융복합기술개발사업(농공상용융합형과제) 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(기업제안과제)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(창업과제)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(성장과제)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(재도약과제)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(건강관리과제)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(앱과제)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(1인창조기업과제)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(투자연계멘토링과제)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(첫걸음과제)</p>	<p>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 (글로벌중소기업육성과제)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(투자연계과제)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(미래선도과제)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 (R&amp;D기획지원연계과제)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(수요조사과제)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(해외수요처  (글로벌협력과제) 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(산연협력과제) 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(출연연과제) 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(신규설치) 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(업그레이드) 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(산연협력과제) 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(출연연과제)  융복합기술개발사업(산연협력과제)  융복합기술개발사업(센터연계형과제)  융복합기술개발사업(사업화연계과제)  융복합기술개발사업(출연연과제) 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(연구기관제안과제) 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(출연연과제) 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(수요조사과제) 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(기업제안과제)</p>
2013	<p>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</p>	<p>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 중소기업융·복합기술개발사업 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</p>

※ '13년부터 사업단위로 '저변확대', '선택집중'을 구분하여 운영